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233

발의연월일: 2024. 11. 4.

발 의 자:김남희·박홍배·박상혁

김우영 • 민병덕 • 김영환

정성호 • 한민수 • 김영진

이연희 · 송옥주 · 안태준

조정식 · 최기상 의원

(14인)

제안이유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의제로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이를 위하여 현재 실시 중인 군복무 크레딧이나 출산 크레딧 제도를 강화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며, 청년 및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가입 기간 중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모수(母數)개혁도 추진되어야 할 것임.

이에 국민연금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함(안 제3조의2).
- 나. 군복무크레딧 발생 시점을 군 복무를 마친 날로 하고, 군복무크레 딧에 따른 가입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체'로 확대함(안 제18조).
- 다. 출산크레딧의 발생 시점을 자녀를 얻은 때로 하고, 출산크레딧에 따른 가입 인정 기간을 1자녀당 24개월로 하며, 가입 인정 기간의 상한을 없앰(안 제19조).
- 라. 소득대체율을 2025년부터 50%로 상향함(안 제51조제1항).
- 마. 보험료율을 2037년에 13%가 되도록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 함(안 제88조 및 부칙 제4조).
- 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간 상한을 현행 12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함 (안 제100조의4).
- 사. 20세 또는 30세가 되는 날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간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것으로 보게 하며,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는 국가가 전부 지원하도록 함(안 제100조의5 신설).
- 아. 가입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속하는 달에 대

하여 국가가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00조의6 신설).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급되도록 필요한"을 "지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부담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해당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 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이 경우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1개월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 이상의 자녀"를 "자녀"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을 "자녀를 얻은 때에는 그 자녀를 얻은 날에 1자녀 당 24개월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로 한다.

이 경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천분의 1천200"을 "1천분의 1천50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액"으로 한다.

제88조제3항 중 "1천분의 45"를 "1천분의 65"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천분의 90"을 "1천분의 130"으로 한다.

제10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 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를 "지역가입 자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2개월"을 "36개월"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제100조의5를 제100조의7로 하고, 제5장에 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① 제6조에 따른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20세 또는 30세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20세 또는 30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간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에 따른가입자가 소득이 있게 된 때는 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20세 또는 30세가 되는 날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 2.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제91조에 따른 납부 예외 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국가가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전액을 부담한다.
-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0조의6(육아휴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속하는 달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전액(사용자의 부담금은 제외한다)을 부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① 2025년부터 2036년까지 각 연도 별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 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 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5년은 1만분의 465
 - 2. 2026년은 1만분의 480
 - 3. 2027년은 1만분의 495

- 4. 2028년은 1만분의 510
- 5. 2029년은 1만분의 525
- 6. 2030년은 1만분의 540
- 7. 2031년은 1만분의 555
- 8. 2032년은 1만분의 570
- 9. 2033년은 1만분의 585
- 10. 2034년은 1만분의 600
- 11. 2035년은 1만분의 615
- 12. 2036년은 1만분의 630
- ② 2025년부터 2036년까지 각 연도별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5년은 1천분의 93
- 2. 2026년은 1천분의 96
- 3. 2027년은 1천분의 99
- 4. 2028년은 1천분의 102
- 5. 2029년은 1천분의 105
- 6. 2030년은 1천분의 108
- 7. 2031년은 1천분의 111
- 8. 2032년은 1천분의 114

- 9. 2033년은 1천분의 117
- 10. 2034년은 1천분의 120
- 11. 2035년은 1천분의 123
- 12. 2036년은 1천분의 126

제5조(육아휴직자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6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제3조의2(국가의 책무) ①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 -----지급되도록 보 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하다. ② 국가는 연금급여의 지급에 <신 설>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 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이 를 부담한다.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기간 추가 산입)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해당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 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 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후단 ----.. 이 경우 신설> 다만, 「병역법」에 따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이 1개월 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미만인 때에는 1개월로 한다.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 <단서 삭제> 지 아니한다. 1. ~ 4.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②・③ (생략)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 가 산입) ①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u>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u>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 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 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후단 신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 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 <삭 제>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 <삭 제>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 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 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 ② (생 략)
-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 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
가 산입) ① <u>자녀</u>
<u>자녀를 얻은 때에는 그 자</u>
녀를 얻은 날에 1자녀 당 24개
월을
<u>이 경우 자녀 수의 인정</u>
<u>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u>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
서 삭제>

2	(현행과	같음)
	(L D /

3	 		 	
	 첫	부	 	

부담한다.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 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 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 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 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 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 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 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생략)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 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 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 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 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 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 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 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 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생 략)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

]51조(기본연금액) ①
<u>1천분의 1</u>
<u>천500</u>
, 1 (=1=11=1 =1 A)
1. (현행과 같음) 2
<i></i>
가. (현행과 같음)
나

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생 략)

- ②・③ (생략)
-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② (생 략)
 -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 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 소득월액의 <u>1천분의 45</u>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⑤ (생략)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u>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u> 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 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u>금액</u>	
다.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 등)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수</u>
	_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u>지역가입자가</u>	

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u>12개월</u>을 초 과할 수 없다.

-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 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생 략)<신 설>

② (생략)<신 설>

<u>36개 월</u>
·.
<u><삭 제></u>

- 2. (현행과 같음)
- 3. 이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

 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 최
초 연금보험료 지원) ① 제6조
에 따른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20세 또는 30세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20세 또는 30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
간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에 따른 가입자가 소득이 있게 된 때는
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20세 또는 30세가 되는 날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취득하지 않은 경우
- 2.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 득하였으나 제91조에 따른 납 부 예외에 해당하여 연금보험 료를 납부한 적이 없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가입자의 기 준소득월액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고시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국가가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전액 을 부담한다.
-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가입 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지원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0조의6(육아휴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신 설>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생략)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제20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하 적용례) 2008년부터 2027년 까지 각 연도별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본연금액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 각 호 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다 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 17. (생 략)
- 18. 2025년은 1천분의 1천245
- 19. 2026년은 1천분의 1천230

립 지원에 관한 법률 _ 제19조 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속하는 달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전액(사용 자의 부담금은 제외한다)을 부 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7(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현행 제100조의5와 같 유)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1120	소(기	본입	연금액	산성에	대안
	적용	례)			
-					
-					

1. ~ 17.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20. 2027년은 1천분의 1천215 <삭 제>